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【집행부발의】  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1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8.  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검토기간: 2024. 11. 6.(수) ~ 11. 15.(금)

## 2. 개정이유

- 달서평생학습관 확대 개관,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·능동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(안 제6조)
  - “창의발명” 업무: 경제지원과 → 평생교육과
- 그 밖에 분장사무 정비 (안 제6조 ~ 제7조)
  - “소상공인 지원”, “평생학습관 운영” 업무 명시화

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타사항
  - 입법예고(2024. 10. 21.~10. 31.): 의견 없음
  -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비용추계서: 비대상
  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평생교육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달서평생학습관 확대·개관(2025. 4월 예정)에 따라 평생교육과에 ‘학습관운영팀’을 신설하고,
-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경제지원과의 ‘신기술지원팀’을 폐지하고,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‘소상공인지원팀’을 신설하였으며,
- 신기술지원팀 소관업무 지식재산 관련은 ‘경제정책팀’으로, 창의발명 관련은 ‘창의교육지원팀’으로, AI·드론·로봇 등 관련은 ‘디지털정책팀’으로 조정 및 이관하는 것으로,
  - 행정기구 조직개편 주요내용: 1팀 신설

구분	구분청	보건소	동	의회사무국
기존	5국 1실 28과 137팀	1소 2과 1지소 13팀	23동 53팀	1국 4전문위원 4팀
개편	5국 1실 28과 138팀	.	.	.

- 행정기구 조직개편 세부내용

부서명	현 행 → 개 편	팀 명 변경사항	업무조정
디지털정보과	디지털정책팀		AI·드론·로봇 등 디지털신기술 활성화 관련
경제지원과	경제지원팀 → 경제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신기술지원팀	명칭변경 신 설 폐 지	지식재산 관련
평생교육과	교육지원팀 → 창의교육지원팀 학습관운영팀	명칭변경 신 설	창의발명 관련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부서의 신설·명칭 변경, 연계성 등을 고려한 업무 이동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화·세분화 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구 개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 관 계 법 령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0., 2024. 3. 29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0. 3. 10., 2024. 1. 16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【 현 행 조 례 】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제126조, 제127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장·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의 국장·실장·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·지소장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·과장 및 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②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2 장 구 분 청

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·기획경제국·행정교육국·복지증진국·문화환경국 및 도시창조국을 둔다.

제4조 <삭제 2023. 10. 11.>

제5조(청렴감사실) 청렴감사실장은 청렴·조사·감사·확인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의 2 < 삭제 2015. 7. 31.>

제5조의 3 < 삭제 2017. 12. 29.>

제6조(기획경제국)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전략과·디지털정보과·홍보미디어과·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.

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획·인구 및 혁신·예산·공모·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·지속가능발전·기후변화대응·규제개혁법무 등에 관한 사항
2. 디지털 및 스마트도시 조성·정보빅데이터·통계·전산운영·통신·통합관계 등에 관한 사항
3. 홍보기획·언론지원·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
4. 일자리창출·취업지원·사회적경제·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
5. 경제정책·기업지원·창의발명·유통지원·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(행정교육국)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·평생교육과·종합민원과·세무과·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.

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총무·자치행정·의회협력·국제교류·외국인주민 지원·인사교육·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

2. 평생교육 · 교육지원 · 독서진흥 ·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민원행정 · 민원처리 · 여권 · 가족관계등록 · 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
4. 세무관리 · 시세 · 구세 · 주민세 · 지방소득세 · 세무조사 · 과표 등에 관한 사항
5. 세입총괄 · 체납정리 · 체납처분 · 세외수입 ·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
6. 회계 · 복식부기 ·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(복지증진국) ①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 · 어르신장애인과 · 아동가족과 · 행복나눔과 및 위생과를 둔다.

② 복지증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복지정책 · 기초생활보장 ·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2. 노인정책 · 노인시설 · 장애인복지 ·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
3. 여성가족친화 · 아동친화 · 출산장려 ·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 · 결혼장려 · 보육 ·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
4. 나눔협력 · 자원봉사 · 희망이음 · 현장복지서비스 ·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
5. 공중위생 · 식품안전 · 음식문화개선 · 위생지도 ·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3(문화환경국)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· 체육청소년과 · 교통행정과 · 주차관리과 · 청소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.

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 · 관광진흥 · 선사문화 · 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
2. 체육진흥 · 체육시설 ·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
3. 교통행정 · 교통시설 · 운수행정 · 교통사범관리 등에 관한 사항
4. 주차기획 · 교통지도 · 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5. 청소행정 · 재활용 ·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
6. 환경보호 · 대기보전 · 에너지관리 · 수질보전 · 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

제8조(도시창조국)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디자인과 · 공원녹지과 · 안전도시과 · 건설과 ·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.

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시경관 관리 · 도시재생 · 도시계획 · 도시정비 ·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2. 공원 · 녹지 · 산림휴양 등에 관한 사항
3. 안전기획 · 재난관리 · 자연재해 ·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
4. 건설행정 · 도로 · 하수 · 하천 · 도로보수 등에 관한 사항
5. 건축지도 · 건축 · 시설건립 · 재개발 · 건축허가 · 공동주택관리 ·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
6. 토지행정 · 지적 · 지적재조사 · 부동산 · 지가조사 ·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

7. (삭제 2018. 12. 31.)  
제8조의2 (삭제 2007. 4. 5.)

### 제 3 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

제9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지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제10조(보건소장 등)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.

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과장 및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소관사무)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.

② 보건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보건검진 등에 관한 사항
2. 건강증진·모자보건·건강돌봄·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

③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·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사업소 제1절

#### 제 5 장 동

제18조(설치)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9조(동장) 동에 동장을 두며,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0조(소관사무)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반 운영 및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